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29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이만희·구자근·서천호

엄태영 • 최은석 • 서명옥

이성권 · 김기웅 · 이달희

조은희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명·재산·환경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대형 산불진화장비 도입이 필요함.

무인비행장치(드론)는 접근이 어려운 산림 지역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현행 항공안전법상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비행장치에 한하여 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과 달리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비행제한구역, 야간·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 여러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산림감시활동이 어려움.

산불진화용 초대형 헬기(8,000ℓ이상)의 경우 미국에서 형식증명 추 진 중인 재생수리 된 중고 헬기가 유일한 실정으로 형식증명 미인증 시 납품이 불가하고,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군에서 사용하는 초대형 헬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미군에서 4,000시간 이상 사용 후 퇴역하는 중고 헬기를 재생수리 및 형식승인을 거쳐 납품되는 실정임. 미국 또한 미군에서 퇴역하는 중고 헬기를 자국의 소방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우리나라 군에서 퇴역하는 헬기를 소방헬기로 전용 가능 하도록 법안을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 가. 군에서 10년 이상 운항하여 안전성이 증명된 항공기의 감항증명 검사 일부를 생략하여 군 헬기를 산불진화에 도입하고자 함(안 제 23조제4항제4호).
- 나.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를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같이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함(안 제131조의2제1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에 제4호를 신설한다.

4. 군에서 10년 이상 운항하여 안전성이 증명된 외국산 항공기 제131조의2제1항 중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을 "군용·경찰용·세관용 또는 산림감시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혀 햀 개 아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 지)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 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 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 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군에서 10년 이상 운항하여 안전성이 증명된 외국산 항공 기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군용・경찰용 또는 특례) ① 군용·경찰용·세관용 또는 산림감시용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